(주) 바이오푸드랩

식품, 축산물 분석검사 위탁 계약서

(이하 "갑" 이라고 한다.)와 ㈜바이오푸드랩(BFL)(이하 "을" 이라고 한다.)는 "갑" 의 식품, 축산물분석에 관한 위탁검사계약(이하 계약이라고 한다.)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 1 조 (위탁업무의 내용) "갑" 과 "을" 이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위탁검사 의뢰,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에 의한 자가품질위탁검사 의뢰 등 "갑" 이 의뢰한 시험 항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다.

제 2 조 (검사대상 및 검사항목) "을" 이 검사하는 제품과 각 제품의 검사 항목은 "갑" 이 제출한 "검사 의뢰서" 에 의한다.

제 3 조 (검사 수수료 및 결제조건) "갑" 이 식품, 축산물 분석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"을"의 시험 의뢰 규정에 정한 시험 의뢰 수수료(부가세별도)를 성적서 발급 전에 "갑"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※ 위탁료 지정 계좌
- 은 행 명 : 우리은행
- 예 금 주 : ㈜바이오푸드랩
- 계좌번호 : 1005-702-799176

제 4 조 (검사일정 및 신청방법) "갑" 은 "을" 의 검사 일정에 따르며, "을" 은 "갑" 에게 최대한 협조하며, 식품, 축산물 분석검사 신청 절차 및 방법은 "을" 의 규정에 따른다.

제 5 조 (시료의 수집) 검사를 위한 시료는 "갑" 이 수집한 후 "을" 에게 전달하거나 필요한 경우 "을" 이 "갑" 에게 출장하여 접수할 수 있다.

제 6 조 (비밀 유지 및 손해 배상) "갑"과 "을"은 이 계약에 근거해 업무상 파악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, 약정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청구자는 손해배상액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계약기간) 계약 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아래와 같은 기간으로 하며, 계약 만료일의 30일전에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년간 자동 연장한다.

* 계약기간 :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 (년)

제 8 조 (계약 해제)

가. "갑" 과 "을" 어느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행을 게을리했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요구 후에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.

나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"갑" 과 "을" 어느 쪽의 책임도 아닌 사유에 의해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.

제 9 조 (부칙)

가. 본 계약 시행이 있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"갑" 과 "을" 의 협의 하에 결정하며, 계약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

나. 이 계약에 의거 거래도중 "갑" 과 "을" 간의 법적 소송 문제가 발생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다.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甲 :

대표이사 : (인)

乙 :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, 1410호~1411호(구로동,마리오타워)
㈜바이오푸드랩

대표이사 : 이 용 표